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912
----------	-------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노웅래 · 정일영 · 임호선
서영석 · 윤미향 · 임종성
이학영 · 윤관석 · 양기대
서영교 · 민형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과 그 위험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관리 과정에서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이하 “사망재해”) 중 45.3%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50세 이상 근로자의 사망재해가 전체의 74.86%로 2/3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와 연령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2년말 기준 5,858천명으로 2012년 기준 취업자(3,071천명)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근로자 기준 근로자의 35%가 50대, 24.6%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현

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

그러나 근로환경·조건은 여전히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실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도 청·장년 세대의 평균적인 신체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적합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임을 고려하면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재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근로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배려의무를 하도록 규정하여 고령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고령근로자”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추가적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업종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분석

제1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분석

제4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고령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고령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제38조·제39조에 따라 안전조치·보건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령근로자의 신체·감각·인지능력을 고려하여 그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5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과 제8항에 따른 고령자 작업환경측정”으로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근로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고령근로자의 신체·감각·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작업환경 실태와 건강영향을 조사(이하 “고령자 작업환경측정”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고령자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결과보고,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7조제1항 중 “결과”를 “결과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고령자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6호 중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 및 고령자 작업환경측정”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령자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제175조제5항제1호 중 “제125조제7항”을 “제125조제7항(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측정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고령자 작업환경측정”으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업주[(같은 조 제3항(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25조제4항”을 “제125조제4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125조제6항”을 “제125조제6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5조제6항제15호 중 “제125조제5항”을 “제125조제5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고령근로자”란 다음 각 목</u> <u>에 모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u> <u>한다.</u> <u>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u> <u>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u> <u>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u> <u>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u> <u>호에 따른 준고령자</u> <u>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u> <u>예방하기 위하여는 추가적</u> <u>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u> <u>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u> <u>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u> <u>업종 또는 직종에 종사하</u> <u>는 사람</u>
4. ~ 13. (생 략)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4. ~ 13. (현행과 같음)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 ----- -----.

1. ~ 7. (생 략) <u><신 설></u> 8. · 9.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 9. (생 략) ② · ③ (생 략) <u><신 설></u>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 ⑦ (생 략) <u><신 설></u>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분석</u> 8.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 ----- -----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분석</u> 8.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39조의2(고령근로자에 대한 안 전·보건조치)</u> 고령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제38 조·제39조에 따라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 령근로자의 신체·감각·인지 능력을 고려하여 그 특성을 반 영하여야 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
---	--

<신 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근로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고령근로자의 신체·감각·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작업환경 실태와 건강영향을 조사(이하 “고령자 작업환경측정”이라 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고령자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결과보고,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⑩ -----작업환경측정과 제8항에 따른 고령자 작업환경측정-----

-----.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① -----

-----결과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고령자 작업환경측정 결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

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1. ~ 5. (생 략)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
정에 관한 서류

7.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신 설>

6의2. (생 략)

7.·8.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

-----.

1. ~ 5. (현행과 같음)

6. -----작업환경측
정 및 고령자 작업환경측정-----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
령자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
니한 자

6의3. (현행 제6호의2와 같음)

7.·8. (현행과 같음)

⑤ -----

-----.

1. -----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 12. (생략)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

-----제125조제7항
(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작업환경측정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고령자 작업환경측정-----

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4. (생략)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사업주[(같은 조 제3항(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 제125조제6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6. (현행과 같음)

⑥ -----

-----.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125조제5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 ----- -----
16. ~ 18. (생 략) ⑦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